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

< Check List 1 >

- ☐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(직무관련자)로 아래에 해당(√)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
- ☐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☐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·법인·단체
☐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·법인·단체
☐	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·법인·단체
☐	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
☐	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,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,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
< Check List 2 >

- ☐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가 아래에 해당(√)되는 경우 Check List 3으로 진행
- ☐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☐	공직자 자신
☐	공직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
☐	공직자의 배우자
☐	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
	공직자 자신,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·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·단체

체크	체크 항목
☐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
☐	출자지분 총수의 30% 이상
☐	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

< Check List 3 >

☐ 거래 행위가 아래에 해당(√)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

☐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종료

체크	체크 항목
☐	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
☐	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
☐	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< Check List 4 >

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아래에 해당(√)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종료

☐ 해당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발생

체크	체크 항목
☐	직무관련자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
☐	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대부업법」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 경우
☐	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·경매·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인 경우
☐	공매·경매·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인 경우